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0년 12월 1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12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2. 10.(금)	담당부서	기술규제조정과
담당과장	정민화 과장(043-870-5550)	담 당 자	박응조 연구관(043-870-5555)

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33개 정비
- 「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」 '21년도 성과, 10일 규개위 확정 -

□ 정부는 '21년 **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(폐지 2개, 통합 1개, 개선 30개)**하기로 결정했다.

※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 : 정부가 운영하는 **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**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, **'19년부터 시행**하여 **금년도 결과는 세 번째 규제개혁의 성과**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상훈)은 **제48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**했다고 밝혔다.

○ 금년에 폐지·통합·개선이 확정된 33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, **국표원은** 국무조정실과 함께 **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**할 계획이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**'19년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**를 통해 **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**('19년 58개, '20년 64개, '21년 64개)하였고, **금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** 정부 인증제도 **실효성 검토 결과는** 다음과 같다.

○ **(통폐합 : 3개)** 유사·중복 제도중 **타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**하여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**3개 제도**를 통폐합한다.

* **(통합 : 1개)**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(해수부, 유사제도인 유기수산물 인증과 통합)
이 외 통합 제도 1개는 기통합되어 검토대상에서 제외

** **(폐지 : 2개)** ①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(과기부, 민간의 심사지침이 강화되어 정부 운영실효성이 낮음)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(복지부, 실효성 없음)

○ **(개선 : 30개)** 인증기준·시험방법 등 개선을 통해 합리화가 필요한 **9개* 제도,**

*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(과기부), 장수명주택인증(국토부), 신기술농업기계지정(농림부) 등

- 적합성평가체계(인증기관 지정,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)를 개선해야 할 **10개* 제도,**

* 한국관광품질인증(문체부), 광업시설 성능 검사(산업부),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(여가부) 등

- 제도 신뢰성 확보 등을 통한 운영방향 제고가 필요한 **11개* 제도 등 30개 제도를 개선**한다.

* 교통신기술인증(국토부), 무항생제수산물인증(해수부),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(국토부) 등

○ **(존속 : 30개) 국민안전, 환경보호, 품질, 국제협약 등과 관련**되는 제도로,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**30개 제도**는 **현행을 유지**한다.

* 유해·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 등 안전인증(노동부), 철도용품 형식승인·제작자승인(국토부) 등

□ **국표원은** 각 부처로부터 **개선·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**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**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,**

○ 내년부터 진행될 **"2주기('22~'24)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"에 대해**, 20년 이상된 법정 인증제도는 보다 강화된 실효성 검토를 추진하여 **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증제도 개선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**이다.

□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장은 "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실행하여 **유사·중복 인증,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·국민의 애로를 해소**하고, **산업 경쟁력 강화**에 이바지하겠다"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조정과 박응조 연구관(☎ 043-870-555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2021년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검토 결과**

1 통·폐합 (3개)

NO	소관 부처	명칭	구분	정비방안
1	해수부	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	임의	**(현행)** '유기수산물인증'과 유사하여 인증실적 없음 **(개선)** 유사 제도(유기수산물인증)로 통합
2	과기부	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	임의	**(현행)** 민간의 평가 및 심사기능 강화로 운영실효성이 적어 '15년 인증제도 정비계획 및 '20년 감사원 인증제도 감사 지적 후속조치
3	복지부	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	임의	**(현행)** 법적 근거는 있으나,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부재로 실적 없음

2 개선 (30개)

O	소관 부처	명칭	구분	정비방안
1	과기부	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(ISMS)	의무	**(현행)** ①'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' 및 '정보보호 준비도평가 제도'와 유사 ②일부 인증기준을 영세·중소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움 **(개선)** ①유사 제도를 흡수하여 동 제도 개선 ②영세·중소기업을 위하여 인증기준을 조정 또는 완화
2	국토부	건설신기술인증(NET마크)	임의	**(현행)** ①타 신기술인증제도에는 없는 신청수수료 폐지 필요 ②검토항목별 세부심사기준 부재 **(개선)** ①신청수수료 폐지 ②평가의 객관성 및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심사기준 마련
3	국토부	자동차 튜닝부품 인증	임의	**(현행)** ①현재 39개 인증대상품목 중 10개에 대해서만 실적 有 ②타 제도와 일부 품목 및 기준에 중복성이 있음 ③인증취소 관련 근거는 있으나 처벌 규정 부재 **(개선)** ①제도의 활성화방안 마련 ②홍보 등 방안 마련 ③처벌 규정 마련
4	국토부	장수명주택 인증	의무	**(현행)** ①'녹색건축인증'과 상호인정은 가능하나, 평가기준 상이 ②대다수 최저등급으로 인증 **(개선)** ①'녹색건축인증'과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평가기준 재검토 ②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최저등급 기준 상향
5	국토부	교통신기술 지정제도	임의	**(현행)** ①'건설신기술 지정제도'와 신청기술의 대상이 유사하여 인증실적 저조 ②인증소요기간이 타 유사 제도와 비교시 장기간 소요 ③타 신기술인증제도에는 없는 신청수수료 폐지 필요 ④검토항목별 세부심사기준 부재 ⑤'우수조달물품' 등록을 위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확인절차 부재 **(개선)** ①지정대상의 분류체계 재정비 등으로 활성화방안 마련 ②피규제자의 편의를 고려한 인증소요기간 단축 ③신청수수료 폐지 ④평가의 객관성 및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심사기준 마련 ⑤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확인절차 마련
6	농림부	신기술농업기계지정	임의	**(현행)** 인증받은 제품의 유사모델 추가 불가능 **(개선)** 유사모델 추가가 가능하도록 절차 마련

O	소관 부처	명칭	구분	정비방안
7	농림부	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	임의	**(현행)** ①원재료의 원산지 비율 등이 핵심 평가기준이므로 '인증'의 용어사용 부적절 ②현행 인증기준을 적용하면 음식점 인증은 어렵고 인증실적 無 ③인증기관 및 인증제품 관련 정보공개 부재 **(개선)** ①제도명 변경 검토 ②음식점 관련 인증대상 제외 ③인증기관 및 인증제품 관련 정보공개
8	농림부	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	임의	**(현행)**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위한 제도이나, 제도명이 우수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것으로 오인 가능 **(개선)** '농산물직거래 우수사업장'으로 제도명 변경
9	문체부	카지노 전산시설 검사	의무	**(현행)** ①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 관련 법적근거 미비 ②제도의 업무절차 및 업무규정 정보공개 부재 **(개선)** ①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정차 및 사후관리 관련 법적근거 마련 ②제도의 업무절차 및 업무규정 정보공개
10	문체부	한국관광품질인증	임의	**(현행)** ①획일적 유효기간(3년)은 부담 ②일부 인증기준의 개선(구체화 등) 필요 ③인증체계를 인증기관의 사규로 운영중 ④특별심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규정 부재 ⑤제도명이 너무 포괄적 ⑥법정인증제도보다는 민간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**(개선)** ①시설의 규모, 업종 등을 고려한 유효기간 재설정 ②일부 인증기준의 구체화 등을 통한 개선 ③운영요령의 상향입법 및 의견수렴 강화 ④사후관리 체계 마련 ⑤제도의 운영범위에 맞추어 제도명 변경 ⑥민간 또는 지자체에서의 운영 검토
11	방사청	국방마크(DQ마크) 인증	임의	**(현행)** ①제도의 법적근거 변경에 따른 고시내용 수정 필요 ②인증마크 및 인증서 양식이 고시 또는 업무규정에 없음 **(개선)** ①제도의 법적근거 변경에 따른 고시내용 수정 ②인증마크 및 인증서 양식을 고시 또는 업무규정에 추가
12	복지부	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	임의	**(현행)** 사후관리체계 부재 **(개선)** 사후관리체계 마련
13	산림청	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	임의	**(현행)** ①유사모델 추가시 기준 및 절차 부재 ②일부 품목의 수수료 규정 부재 **(개선)** ①유사모델 추가 기준 및 절차 마련 ②일부 품목의 수수료 규정 마련
14	산업부	재제조제품품질인증 (REMAN마크)	임의	**(현행)** ①일부 품목의 인증기준 및 품목 추가선정 규정 부재 ②제도소개 관련 정보공개 부재 **(개선)** ①일부 품목의 인징기준 및 품목 추가선정 규정 마련 ②제도소개 관련 정보공개
15	산업부	광업시설 성능(완성) 검사	의무	**(현행)** 평가기준을 인증기관 사규로 운영중 **(개선)** 평가기준의 상향입법
16	산업부	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	의무	**(현행)** 일부 품질기준 부재 및 시험방법 명확화 필요 **(개선)** ①특수탄의 품질기준 마련 ②사염화탄소, 표준무게, 수입탄 확인방법 관련 개정
17	소방청	방염성능검사	의무	**(현행)** 현장처리물품 샘플링을 방염처리업자가 송부하여 신뢰성 미흡 **(개선)** 시료 채취의 신뢰성확보 방안 마련
18	여가부	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	임의	**(현행)** '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'(공고)의 상향입법 필요 **(개선)** 운영규정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상향입법
19	여가부	가족친화인증제도	임의	**(현행)** 인증기준 적용의 문제점, 평가자의 주관 개입 우려, 사회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 개선 등 **(개선)** 인증기준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정비

O	소관 부처	명칭	구분	정비방안
20	특허청	지식재산경영인증	임의	**(현행)** 사후관리체계 부재 **(개선)** 사후관리체계 마련
21	해수부	수산물품질인증	임의	**(현행)** KS와 일부 품목 및 기준 유사 **(개선)** 중복 인증대상의 축소 등을 통해 차별화 필요
22	해수부	우수천일염인증	임의	**(현행)** ①인증실적 저조 ②사후관리 세부판정기준 등의 정보공개 미흡 **(개선)** ①제도 활성화방안 마련 ②관련 정보공개
23	해수부	무항생제수산물인증	임의	**(현행)** ①인증실적 저조 ②유사제도(유기수산물인증)와 차별화 필요 ③제도의 목적과 인증기준의 연관성 부족 ④세부심사기준 및 심사관리매뉴얼 부재 **(개선)** ①활성화방안 마련 ②유사제도(유기수산물인증)과 중장기적 통합 ③제도의 목적과 연관성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④세부심사기준 및 심사관리매뉴얼 마련
24	해수부	유기수산물인증	임의	**(현행)** ①인증실적 저조 ②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인증과 유사 ③인증기준이 국제기준과 불일치 ④해조류의 유기성 인증기준 부재 ⑤세부심사기준 및 심사관리매뉴얼 부재 **(개선)** ①활성화방안 마련 ②유사제도와 통합하여 개선 ③인증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④해조류의 유기성 인증기준 마련 ⑤세부심사기준 및 심사관리매뉴얼 마련
25	행안부	방재신기술	임의	**(현행)** ①인증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인증제도 운영 ②타 제도 대비 수수료 과다 **(개선)** ①인증제도 운영규정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상향입법 ②수수료 경감방안 마련
26	행안부	재난안전제품 인증	임의	**(현행)** ①유사제도와의 중복 가능성 ②유사 모델도 신규 인증과 동일 절차 ③세부 인증기준 부재 ④인증대상 품목 불분명 **(개선)** ①중복성 해소를 위한 차별화 방안 마련 ②유사 모델 인증시 인증절차 간소화방안 마련 ③세부 인증기준 마련 ④인증대상 품목을 명확히 규정
27	환경부	환경신기술인증·기술검증 (NET마크)	임의	**(현행)** 일부 심사기준의 유사·중복성, 환경분야에 특화한 심사기준, 세부 심사기준 구체화 등 개선 필요 **(개선)** 심사기준 개정 및 구체화
28	환경부	제작자동차 인증, 검사 및 정밀검사(배출가스)	의무	**(현행)** ①전기차에 대한 모델구분 기준 부재 ②서류심사자의 자격 관련 규정 부재 ③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차 등의 동 제도의 포함여부 확인 불가 **(개선)** ①전기차에 대한 모델구분 기준 마련 ②서류심사자의 자격 관련 규정 마련 ③전기차 등의 포함여부가 확인가능하도록 개선
29	환경부	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인증	의무	**(현행)** 인증기관 사후관리체계 부재 **(개선)** 인증기관 사후관리체계 마련
30	환경부	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	임의	**(현행)** ①산림교육프로그램인증과 유사·중복 ②인증시 장기간 소요 ③지정기관의 지정근거 부재 ④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운영세칙 비공개 **(개선)** ①유사 제도와의 제출서류 면제 및 통합 방안 마련 ②심의위원회 개최빈도 제고방안 마련 ③지정기관의 지정근거 마련 ④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운영세칙 공개